

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9-94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11.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서비스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지·산·학·연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일상에서의 로봇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 도모
- 이를 통해 안산시 로봇시티 생태계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
 - ※ 사후보고 사유 : 협약기관의 일정 및 사업 추진의 긴밀성 등

법적근거

-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주요내용

- 제1조(목적)
 - 서비스 로봇 등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협력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로봇시티 생태계 조성 및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
- 제3조(협력사항)
 - 관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실증
 - 서비스 로봇 활용 방안 마련 및 공모사업 등 협력사업 추진
- 제4조(역할)
 - 안 산 시 : 로봇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 행정·재정적 지원 노력
 - 한 양 대 : 로봇 활용 방안 마련, 로봇 도입 사업 관련 자문 수행
 - 경기 TP : 정부 공모사업 등 로봇 협력사업 추진·운영 노력
 - 로보티즈 :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 도입과 활용에 협력
- 제5조(유효기간 등)
 - 효력은 2년이며,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 발생
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【붙임 1】
- 협약서(안) : 【붙임 2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3】
- 협약(동의) 안전 점검표

[붙임 1]

**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(제3조제2항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추계 불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협약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: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장 박종미

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서(안)

안산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(안)

안산시와 한양대학교, 경기테크노파크, (주)로보티즈(이하 "협약기관")는 안산시에 서비스 로봇 도입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서비스 로봇 등의 도입 및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 로봇시티 생태계 조성 및 로봇 산업 육성·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) 협약기관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협약내용을 이행하고,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적극 협력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관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 도입 및 실증
2. 서비스 로봇 활용 방안 마련
3. 정부 공모사업 등 로봇 협력사업 추진
4. 그 밖에 협약 당사자가 합의한 사업 및 공동 발전에 관한 사항

제4조(역할) ① 안산시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로봇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에 따른 행정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.

② 한양대학교는 안산시의 서비스 로봇 활용 방안 마련과 로봇 도입 사업 관련 자문을 수행한다.

③ 경기테크노파크는 정부 공모사업 등 로봇 협력사업 추진·운영을 위해 노력한다.

④ (주)로보티즈는 안산시에 서비스 로봇을 비롯하여 다양한 로봇 도입과 활용에 협력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.

제5조(유효기간 등) ① 이 협약의 효력은 2년이며, 상호 협의하여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다.

제6조(협약변경) 협약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보호)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할 수 없고,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협약기관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해석 등)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협약내용의 해석에 이견(異見)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,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11월 10일



안산시

시장 이민근



경기테크노파크

원장 정진수



한양대학교

총장 이기정

ROBOTIS

대표 김병수